



문의	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	과장 이춘무 사무관 서정석	042-481-8172 042-481-5920
	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
“특허청, 대한변리사회 임원진에 과태료 부과 예정”

-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청의 감독을 대한변리사회가 거부 -

- 특허청(청장 최동규)은 특허청의 변리사법 및 민법상 감독권한에 근거한 검사를 대한변리사회가 거부(2017.4.5.)함에 따른 조치로, 민법 제97조에 의한 과태료를 대한변리사회 임원진(총 20명)에게 부과할 계획이다.
- 특허청이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변리사회의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. 최근 몇 년간 대한변리사회에서는 변리사 실무수습, 회무 운영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.
 - 2015년 변리사 실무수습(205명)에서 허위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수습생(72명)이 공가를 인정받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하였고, 2016년에는 신입 회장이 취임(2016.3.2.) 한 달 만에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.

□ 이에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 조직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, 변리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 등 회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(2016.5.~8.)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검사 계획을 통보(2016.10.31.)하였다.

-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의 감독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료제출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(2016.11.2.)하였으나,
- 자료제출요구는 “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실행위에 불과”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.(2017.3.28.)

□ 대한변리사회가 청구한 행정심판이 각하됨에 따라, 특허청은 회계 등 회무에 관한 검사 계획을 통보(2017.3.28.)하였으나,

- 대한변리사회가 또 다시 검사를 거부(2017.4.5.)하여, 민법 제97조에 의한 과태료를 변리사회 임원진에 대해 부과하게 된 것이다.

□ 또한, 법에 따른 감독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에 국가 사무인 변리사 등록 업무 등을 계속 위탁할지 여부에 대하여도 신중히 재검토할 계획이다.

※ 첨부 1 : 실지검사 관련 법 규정

첨부 2 : 실지검사 관련 경과

□ 변리사법

- 제13조(변리사회에 대한 감독)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회를 감독한다.
- ②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리사회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리사회의 업무상황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,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, 출입 시 성명, 출입시간,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.

□ 민법

제37조(법인의 사무의 검사, 감독)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, 감독한다.

제97조(벌칙) 법인의 이사,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1.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
2.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
3. 제37조, 제95조에 규정한 검사, 감독을 방해한 때
4.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
5.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
6. 제79조,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
7. 제88조,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

붙임 2

실지검사 관련 경과

일자	주요내용
'14.12.17. ~ '15.2.25.	• 대한변리사회에서 변리사 시험 합격자(205명)를 대상으로 실무수습(집합교육) 진행 중 다수의 수습생(72명)이 허위 병원진단서를 제출해 공결 처리를 받음
'16.2.19. ~ '16.3.2.	• 대한변리사회 회장 선출(제38대, 강일우 회장) 및 취임
'16.4.4.	• 임시총회 개최 및 강일우 회장 해임 * 대한변리사회 회규에는 회장 해임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있지 않음
'16.5.3.	• 임시총회 개최 및 회장(제39대, 오규환 회장) 선출·취임
'16.5.25. '16.6.10.	• 특허청은 실지검사를 위해 대한변리사회에 회비 관련 자료, 위탁업무 관련 자료, 총회 관련 자료 등 제출 요구
'16.7.12.	• 대한변리사회는 위탁업무인 등록업무, 의무연수, 실무수습에 관한 일부 자료만 제출하고, 회비·총회 관련 자료는 제출 거부
'16.8.10.	•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에 회비 및 총회 관련 자료 제출을 재요구
'16.10.31.	•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에 실지검사 계획 통보
'16.11.2.	•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의 자료 제출 요구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
'16.11.14.	• 대한변리사회는 실지검사 당일 현장에서 특허청의 실지검사 거부
'16.11.15.	•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에 실지검사 계획 재 통보
'16.11.23.	• 대한변리사회는 행정심판 청구를 이유로 실지검사 보류 요청
'16.11.28.	•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의 실지검사 보류 요청을 받아들여,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회계 등 회무 전반에 관한 실지검사는 보류
'16.11.28. ~ 11.30.	• 특허청은 등록업무에 관해서만 실지검사를 실시하고 개인 정보보안 취약 문제 등에 대한 처분을 요구('16.12.14)
'17.3.28.	• 대한변리사회가 청구한 행정심판청구가 각하
'17.3.28.	•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에 실지검사 계획 재통보
'17.4.5.	• 대한변리사회가 회비 등 회무에 관한 특허청의 실지검사 거부